제 **289회 임시회** 2010. 4.23.(금)

# 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 운행차 배출기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

충청북도의회 건설문화위원회

## 심사보고서

2010. 4.23. 건설문화위원회

### 1. 심사 경과

- □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- □ 제출 및 회부일자
  - 제출일자 : 2010년 4월 6일
  - 회부일자 : 2010년 4월 7일
- □ 상정일자 : 제28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
  - 2010.4.15: 제1차 건설문화위원회의,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,

심사의결

#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문화관광환경국장 이 장 근)

- □ 제안 이유
  - 자동차관리법(제43조의2)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종합검사시 대 기환경보전법(제63조)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 정밀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법개정에 따라 「충청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 밀검사에 관한 조례」를 폐지하고자 함.

### □ 주요 내용

○ 충청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폐지

### 3. 검토보고 요지

### (건설문화전문위원 길 기 웅)

- 충청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검토한바
- 자동차관리법(제43조의2)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종합검사시 대기 환경보전법(제63조)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 정밀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자동차관리법개정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「충청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」를 폐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
- 동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됨
-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- 5. 토론 요지 : 생 략
- 6. 심사 결과 : 원안 의결
- 7. 소수의견 요지 : 없 음

### 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

### 9. 심시보고서 첨부서류

○ 충청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충청북도 조례 제 호

### 충청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충청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.

#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관련법령 발취

#### □ 자동차관리법

제43조의2(자동차종합검사) ①「대기환경보전법」제63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에 등록한 자동차소유자 및 「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」제25조제1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는 정기검 사와「대기환경보전법」제6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배출가스 정밀검사(이하"정밀검사"라 한다) 또는「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」제25조제2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배출가스 검사(이하"특정경유자동차검사"라 한다)를 통합하여 국토해양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동차종합검사(이하"종합검사"라 한다)를 받아야 한다. 종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정기검사, 정밀검사 및 특정 경유자동차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.

1. ~ 3. "생략"

#### □ 대기환경보전법

제63조(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) ①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등록(「자동차관리법」 제5조와 「건설기계관리법」 제3조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)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관할 시·도지사가 그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(이하 "정밀검사"라 한다)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저공해자동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.

- 1.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・고시된 대기환경규제지역
- 2.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
- ② ~ ⑦ "생략"